

울산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2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

변론 종결2021. 3. 24.

판결 선고2021.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접수 제47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7. 3. 원고에게 '2019. 4. 2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 2019. 12. 25.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76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9.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20. 4.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접수 제47975호로 2020. 3. 6.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거나 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당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D 등 인부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금채무의 변제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기타 사정만으로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현지

별지